

#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복음적 종교개혁의 정신과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 을 이념으로 하여, 복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길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7.7.12.개정)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루터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82번길 20 루터대학교에 둔다.(2006.2.13.)(2011.2.13.개정)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7.21.개정), (2018.2.8. 개정)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2.24.신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 17조** (2006. 12. 6 조삭제)

**제18조 ~ 21조** (1986. 5. 19 조삭제)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2006.12. 6개정),(2008.7.21 개정), (2011.2.13 개정)

1. 이사 9인
2. 감사 2인

② 이사중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한다.(2008.7.21 개정)

**제22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제1조의 설립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기독교 한국루터회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2016.4.28.개정)(2017.12.27.개정)(2021.2.3.개정)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루터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사람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2006.12. 6 개정)

1.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이하 “총회” 로 한다)와 협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8.7.21 개정)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다.(2006.12.6.신설)

**제24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는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2006.12.6.신설),(2008.7.21.개정)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2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2006.12.6.신설),(2008.7.21.개정)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2006.12.6.신설),(2008.7.21.개정)

④ <삭제> (2008.7.21.삭제)

**제24조의 3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루터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2008.7.21.신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7.21.신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2008.7.21.신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2008.7.21.신설)

**제25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2006.12.6.개정),(2008.7.21.개정),(2018.2.8.개정)

③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2006.12.6.개정)(2021.2.24.개정)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2008.7.21.개정),(2018.2.8.개정)

⑤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2006.12.6.신설)

⑥ 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12.6.신설),(2008.7.21.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6.12.6.신설),(2008.7.21.개정)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5조의2(임원취임 이사회 결의 취소)**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는 그 취임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2021.2.24.신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을 때

6.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을 때

**제26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2008.7.21 개정)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2008.7.21 삭제)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기능 및 직무)** ① 이사회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감사는 법인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를 감독한다. 감사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늘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할 수 없다.(2018.2.8.개정)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2018.2.8.개정)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 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2021.2.24.개정)

1. 학교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세부적인 운영절차등을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을 정한다.(2018.2.8.개정)

**제31조의 2 (이사회 운영 및 책무성)** ①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고직원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금 확보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2018.2.8.개정)

③ 법인사무국은 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발생 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세부적인 운영절차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다.(2021.2.3.개정)

**제32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006.12. 6 개정)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6.12. 6 개정) (2008.7.21. 개정)

③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를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2021.2.3.개정)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006.12. 6 신설), (2008.7.21 개정)(2021.2.3.개정)

**제35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006.12. 6 개정)
2. 제 2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권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6.12.6.개정)

##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영위한다.

- ① 금전투자신탁
- ② 육림사업

## 제 5 장 해 산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8.7.21. 개정)

**제37조의2(해산 후 기록물 관리)** 해산 후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2.24.신설)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총회 산하교육 기관에 귀속된다. (2008.7.21 개정)

**제39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008.7.21 개정)

## 제 6 장 교 직 원

### 제 1 절 교 원

#### 제1관 임 용

**제40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루터대학교의 총장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2006.12.6.개정)(2021.2.24.개정)

②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장 임기 중 궐위 시 총장직무대행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총장직무대행자 선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한다.(2006.12.6 개정)(2016.11.29.개정)(2021.2.24.개정)

③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한다.(2021.2.24.개정)

#### 1. 근무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012.12.18.개정)

2. 급 여: 정관 제 46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의 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 40조의 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의 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임용권자가 변경할 수 있다.(2021.2.24.개정)

④ 조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6.4.28.개정)(2021.2.24.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2.24.개정)

**제40조의 2 (겸임교원 등)** 총장은 겸임교원, 명예교원, 객원교원, 석좌교원, 특임교원, 조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고 총장은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2012. 2.16.개정)(2012.12.18.개정)(2016.4.28.개정)(2016.11.29.개정)(2021.2.24.개정)

**제40조의 3 (교원인사규정)**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2021.2.24.개정)

**제40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0조 3항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21.2.24.신설)

## 제2관 신분 보장

**제41조 (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 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4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2021.2.24.개정)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 기관 또는 재외 국민 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2008.7.21 개정)(2021.2.24.개정)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2021.2.24.신설)

8. 관할청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연구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006.12.6.개정),(2008.7.21.개정)

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입자로 종사하게 된 때(2006.12.6.신설)

**제42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 41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 41조 제 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 41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 41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 41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 41조 제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2008.7.21.개정)(2021.2.24.개정)

7. 제 41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8. 제 41조 제 9호의 사유로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2006.12.6 신설)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 5항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2008.7.21 개정)

② 제 41조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6호 및 제 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06.12.6.개정)(2008.7.21.개정)(2012.2.16.개정)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다.(2021.2.24.신설)

**제45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2021.2.24.개정)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2.24.개정)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2021.2.24.신설)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2021.2.24.개정)

④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항 또는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 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2021.2.24.개정)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2.24.개정)

⑦ 제 2항 제 1호와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항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2021.2.24.개정)

**제45조의2(중대 사안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교내 관련기관의 의견조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하여 고소·고발·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16.4.28.신설)(2021.2.24.개정)

1. 성추행, 성폭력, 공공횡령 등과 같이 혐의 사안이 중대할 것

2.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것

② 피해자가 교원, 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인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자가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직접 고소,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은 해당자의 사직원과 무관하게

징계 또는 징계 예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기관의 조사, 수사 등이 개시된 때에는 징계 또는 징계 예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2021.2.24.개정)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 2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7조의3 (명예퇴직)**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제도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예퇴직 규정으로 정한다.(2021.2.24.개정)

### 제3관 교원 인사위원회

**제48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의 인사(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루터대학교의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2012. 2.16.개정)(2021.2.24.개정)

2. (1998. 2. 4 삭제)

3.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루터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 위원회는 제 4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0조 (인사 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이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2016.4.28.개정)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4조 (인사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 (운영 세칙)** 인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6조 (교원 징계 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 법인의 이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012.12.18.개정)(2021.2.24.개정)

**제57조 (삭제)**

**제58조 (교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 (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 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 (제척 사유)** 교원 징계 위원회와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0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 징계 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0조의 3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2021.2.24.개정)

**제61조 (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 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를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 (징계 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 징계 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

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2021.2.24.개정)

③ 임용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2017.7.12.개정)(2021.2.24.개정)

④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 징계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징계 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3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2.24.개정)

1. 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할)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012.12.18.개정)

**제63조4 (경고 등 처분)** ①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신설2019.6.25)

②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기관의 교원 및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상급자의 지시 등을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때

4.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위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징계조치가 곤란한 때

6. 관할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징계이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③제63조4의 경고 및 주의 처분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2021.2.24.개정)

④경고 및 주의 처분은 그 처분대상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한다.

⑤경고·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64조 (교원 징계 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 징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 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 (운영 세칙)** 교원 징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절 재심 위원회**

제66조~ 79조 (2005.4.2.조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인 및 고용원, 연구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2016.4.28.개정)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 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1조 (임용)** ①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 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2021.2.24.개정)

이때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재임용은 임용 1개월 전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2019.6.25. 개정)

**제81조 2 (명예퇴직)**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제도를 두며,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예퇴직규정으로 정한다.

**제82조 (복무)** 일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83조 (보수)** 일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4조 (신분보장)** 일반 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일반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 조직은 직원대표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조직하여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직원재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 7 장 직 제

### 제 1 절 법 인

**제86조 (법인 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루 터 대 학 교

**제87조 (총장)** ① 루터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루터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1998. 2. 4 삭제)

④ (1998. 2. 4 삭제)

**제87조의2 (루터대학원장)** ① 루터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2009.4.28.개정) (2012. 2.16.개정)

② 루터대학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2009.4.28.개정)(2012. 2.16.개정)

**제88조 (하부 조직)** ① 루터대학교에 교목처, 기획조정처, 교학처, 문헌정보관, 총무처를 둔다.(2010.10.26개정)(2012.2.16.개정)(2016.4.28.개정)(2016.11.29.개정)(2017.10.31.개정)(2018.9.20.개정)(2020.6.30.개정)

② 교목처장은 목사로 보하고 기획조정처장 및 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 문헌정보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총무처장은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차상급자로 보할 수 있다.(2009.4.28.개정)(2016.4.28.개정)(2016.11.29.개정)(2017.7.12.개정)(2017.10.31.개정)(2018.9.20.개정)(2020.6.30.개정)

③ 제 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④ 보직처장은 소속 부처를 통괄하고, 담당 교직원을 관리 감독한다.(2019.6.25.개정)

- 제89조 (부속·부설기관 및 연구소시설)** ① 학교에는 부속·부설기관 및 연구소를 둔다.  
 ② 학교의 부속·부설기관 및 연구소에는 장을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보한다.  
 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0조( 문헌정보관)** 문헌정보관에 문헌정보관장을 두며, 문헌정보관장의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8.9.20.개정)(2020.6.30.개정)
- 제90조의 2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루터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2006.2.13 신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차상급자로 보할 수 있다. (2006.2.13 신설)(2017.7.12.개정)  
 ③ 루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006.2.13.신설)  
 ④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2006.2.13.신설)  
 ⑤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06.2.13.신설)
- 제90조의 3 (디아코니아사업단)** ① 디아코니아사업단의 단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차상급자로 보할 수 있다. (2006. 2. 13 신설)(2017.7.12.개정)(2020.9.24.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디아코니아사업단 규칙으로 정한다.(2006.2.13.신설)(2020.9.24.개정)
- 제90조의 4 (노인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017.7.12.신설)

### 제 3 절 정 원

**제91조 (정원)** 법인 및 루터대학교에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 8 장 대학평의원회

- 제92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006. 12. 6 신설)
- 제93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산업체), 학부모 그리고 동문·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2006.12.6.신설),(2008.7.21.개정),(2017.12.27.개정)(2021.2.3.개정)
1. 교원 3인(정년트랙 2인, 비정년트랙 1인)
  2. 직원 및 조교 2인 (정규직 ,비정규직 및 조교 중 2인)
  3. 학생 2인(학부대표 1인, 루터대학원대표 1인)
  4. 동문 1인
  5. 학부모 1인
  6. 지역사회(산업체)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인
  7. (삭제)
  8. 강사 1인

**제93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산업체), 학부모 그리고 동문·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2006.12.6.신설),(2008.7.21.개정),(2017.12.27.개정)(2021.2.3.개정)

1. 교원 3인(정년트랙 2인, 비정년트랙 1인)
2. 직원 2인 (정규직,비정규직 중 2인)
3. 조교 2인
4. 학생 2인(학부대표 1인, 루터대학원대표 1인)
5. 동문 1인
6. 학부모 1인
7. 지역사회(산업체)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인
8. 강사 1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의하면 반드시 조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조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2. 직원 및 조교 2인 (정규직 ,비정규직 및 조교 중 2인)”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 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006.12.6 신설)

③ 구성 단위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의원 선발을 진행하였으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 논의를 통해 남은 임기 간 타 구성단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한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은 준수한다.(2021.2.3.개정)

**제94조(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 또는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2006. 12. 6 신설)

**제95조(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2006. 12. 6 신설)

② 의장은 교원대표 중 호선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2006.12.6 신설)(2021.2.3.개정)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2006. 12. 6 신설)

**제96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06. 12. 6 신설),(2017.12.27.개정)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06.12.6 신설)

**제97조(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2006. 12. 6 신설) (2008. 7. 21 개정)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위하는 사항
- ☞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위하는 사항

**제98조(평의원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6. 12. 6 신설)

**제99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6.12.6 신설)

## 제 9 장 보 칙

**제100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 및 루터대학교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 소                   |
|-----|-------|------------|----|-----------------------|
| 이사장 | 지 원 상 | 1924. 8. 9 | 2  | 강남구 반포동 신반포APT 12-304 |
| 이 사 | 도 로 우 | 1929.10.18 | 4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03-1    |
| 이 사 | 허 송   | 1935. 4.12 | 4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201-1     |
| 이 사 | 서 윤 섭 | 1914. 1.20 | 2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55-34    |
| 이 사 | 김 재 록 | 1920. 4. 1 | 4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01-25    |
| 감 사 | 김 윤 철 | 1945. 8.13 | 1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49-2      |
| 감 사 | 박 성 완 | 1945.11.10 | 2  | 부산시 남구 광안 3동 1036-3   |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루터신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루터신학교는 2004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이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휴학생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 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루터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한다.
- ④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루터신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 의무는 루터신학대학교가 이를 승계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은 개정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제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제40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40조2항, 제40조의 2, 제88조)은 201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법인 일반 직원 정원

| 총 계    | 3명 |
|--------|----|
| 일반직계   | 2명 |
| 3급     | 1명 |
| 4급(참사) | 1명 |
| 기능직계   | 1명 |
| 9등급    | 1명 |

<별표2>

#### 대학 일반직원 및 기능직 정원

| 총 계       | 17명 |
|-----------|-----|
| 일반직 및 기능직 | 1명  |
| 4급        | 1명  |
| 5급        | 2명  |
| 6급        | 3명  |
| 7급        | 3명  |
| 8급        | 4명  |
| 9급        | 3명  |

#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95조에 의거,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2조 (자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보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관리·보존함에 있어 정관 제6조 2항 기본 재산의 취득 이외의 다음 사항은 시행 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토지의 지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①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35일전까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 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이사장과 총장이 판단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편성이 가능하나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과 총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 5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정수의 3분의 2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6조(이사장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2018.2.8.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장 입후보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6조2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①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이사회는 예산이사회 및 결산이사회로 하며, 각각 관계법령 기한 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9.20.]

**제6조의3 (의결사항)** ①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기본재산의 취득(부동산의 수증을 포함한다),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 담보제공
2. 건축(신축, 증축 등 취득사항 외 개축, 대수선, 멸실을 포함한다) 사항
3. 조건부 기부금의 수증
4. 예산 외의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채무의 부담 및 적립금의 용도변경
5. 불용품의 처분 및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조직 편제의 변경 계획
  - 가. 학과, 대학원 신설 및 폐지
  - 나. 특별교육과정 신설 및 폐지
2.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가. 교원, 직원, 학생의 정원 운영계획
  - 나. 시설건립 기본계획(면적, 시기, 위치, 소요예산 등)
  - 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 라. 학생 등록금 및 장학정책 운영계획
  - 마.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계획
  - 바. 대학 재정운영계획
3.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제도의 신설, 변경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관 제3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반 규정(교직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2021.2.24.개정)
2. 행정절차 사항(관할청의 인·허가, 승인, 신고 또는 보고 등)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이사회 산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이사회가 이미 승인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이 심의, 결정해야 한다.

1.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집행에 착수하는 경우
2. 건축 사항 가운데 이사회에서 승인한 면적 또는 비용이 10%를 초과하여 증감하거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 승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8.9.20.]

**제6조의4 (보고사항)** ① 이사회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사무국을 통하여 설치대학 또는 법인 산하 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

1. 대학 평가 보고서
2. 중장기 발전계획 중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항
3. 연간 운영계획
4. 연간 자체평가보고서

5. 주요 사업계획 (예산편성 관련)
6. 교직원 채용계획(학과별, 분야별 채용계획) 및 최종 임용결과
7. 신입생 선발정책
8. 대학발전기금 수증 결과
9. 산하위원장이 이사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 가운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진행하는 사업의 경과
11.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8.9.20.]

**제6조5 (회의록 작성)** 이사회 회의록은 법인사무국에서 작성하고, 당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간서명 대표자 3인의 서명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차기 이사회에서 접수한다.

[본조 신설 2018.9.20.]

### 제3절 분과위원회

**제6조6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결의로 해당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9.20.]

**제6조7 (위원의 배정 및 임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및 법인국장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배정한다. 다만, 회의 내용 중 감사(監事) 관련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감사가 배석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보직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9.20.]

**제6조8 (위원회 소집 등)** ① 각 위원회는 이사장 명의로 소집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8.9.20.]

**제6조9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각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8.9.20.]

**제6조10 (위원회 회의록)** 각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인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18.9.20.]

## 제 4 장 수익사업

**제7조 (수익사업)**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36조에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 5 장 부 칙

**제8조 (광고)** 이 법인이 법령,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루터대학교의 홍보매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9조** 본 세칙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본 세칙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 2005년 2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징계재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심위원회)** 이 법인과 루터대학교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직원 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직원 징계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21.2.24.개정)

1. 법관,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4.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재심청구)** ① 징계처분 및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과 서류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자의 소속기관명, 직, 성명, 주소, 생년월일과 성별
2.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
3. 재심청구의 서류
4. 재심에 필요한 증거

**제6조 (심사)**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8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9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를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재심사건

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징계 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처분이 확인될 때 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재심 심사 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2조 (재심 심사 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 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 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 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재심결정의 효력)**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또는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일반직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2021.2.24.개정)

**제16조 (운영세칙)** 재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